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86호(2017.03.09.)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최초 결정되고 용산구고시 제2020-143호(2020.08.13.)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사업 실시계획인가 되고, 용산구고시 제2021-117호(2021.06.11.), 용산구고시 제2024-65호(2024.05.24.), 용산구고시 제2025-173호(2024.12.5.), 용산구고시 제2026-11호(2026.01.23.)실시계획 변경, 용산구 고시 제2026-23호(2026.2.13.)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 고시된 용산구 후암동 168일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 결정(경미한 변경)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24일

용 산 구 청 장

가. 결정(변경) 취지

- 서울특별시 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 지적확정에 따른 시설면적 결정(변경)

나.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(변경)

-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시설결정면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변경	공공청사	-	후암동 168번지	13,050.6	감) 56.8	12,993.8	서고 제2017-86호 (2017.03.09.)	

-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시 설 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	비고
변경	공공청사	○ 시설결정 면적 · 기정 : 13,050.6㎡ · 변경 : 12,993.8㎡ 감) 56.8㎡	○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	

다. 관계도면 :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지형도면 고시 “붙임” 참조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199-74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